

고용노동부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

고용노동부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(서울북부고용센터, 강북성북고용센터)에서 근무할 기간제 직업상담원을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.

2024. 12. 6.
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장

I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

고용형태	채용분야 (담당업무)	유 형	채용인원		채용 예정지
			일반 전형	장애인 전형	
기간제 근로자	기간제 직업상담원 (실업급여 업무지원)	(유형1) 일반, 서울북부고용센터	4명	-	서울북부 고용센터
		(유형2) 제한경쟁 장애인, 서울북부고용센터	-	1명	
		(유형3) 일반, 강북성북고용센터	1명	-	강북성북 고용센터

※ (중복지원 불가)

- 채용예정지(서울북부고용센터, 강북성북고용센터) 및 유형(일반/장애인)을 구분하여 1곳만 지원 가능
 -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및 소속 지청에서 실시하는 2025.12.자 채용에 중복 접수하는 경우 탈락처리 됨에 유의
 - 서울북부지청에서 실시하는 기간제직업상담원(대체인력 등) 2025.1.2.자 채용과 중복지원 불가
- ※ '25년도 정부예산안 국회 의결상황에 따라 채용계획이 취소되거나, 채용인원, 채용일정, 근무기간 등 채용조건이 변경될 수 있음

II 응시자격

구 분	주 요 내 용
자격	· (유형1)(유형3) 제한 없음 · (유형2) 「장애인 복지법」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
학력·전공	· 무관
성별, 연령	· 제한 없음
기타	· 채용 즉시 근무 가능 자 · 인사 관련 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· 응시자는 1개의 청·지청에만 응시 가능 · 서울북부지청에서 실시하는 25.1.2.자 기간제 근로자 채용(대체인력 등)과 중복 응시 불가 (※ 기타 유의사항 참조)

III

전형절차 및 일정

○ 전형절차

서류전형



면접전형

- 응시자의 자격요건 및 직무적합 여부를 심사
 - 서류전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최종선발인원의 2배수 이내 선발
-
- 직업기초능력, 직무수행능력 등을 평가

○ 전형일정

전형일정	일시	비고
지원서 접수	2024. 12. 6.(금) ~ 12. 13.(금) 18:00까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입사지원서, 자기소개서,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등 제출※ 워크넷 e-채용마당을 통해 온라인 접수 (이메일 접수는 장애인 유형만 가능, 담당자 유선문의)※ 증빙서류 등도 접수시에 필히 첨부하여 제출※ 워크넷에서 지원서가 최종 제출되었음을 반드시 확인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2024. 12. 19.(목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지청 홈페이지 공고 예정
면접전형	2024. 12. 24.(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면접 일시 및 장소 공고 예정
면접전형 합격자 발표	2024. 12. 27.(금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지청 홈페이지 공고 예정
채용	2025. 1. 2.(목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근로계약 체결

※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는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

※ 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조기 퇴직하는 등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예비합격자 순서대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하여 결원의 잔여 근무기간만큼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

IV

우대사항

구분	우대사항
자격사항 <서류전형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직업상담사 자격증 보유자
경력사항 <서류전형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직업상담 관련분야 근무 경력자

가점부여 <서류 및 면접전형>	가점항목	가점 부여 내용
	법정가점 (법률상 취업지원 대상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원자에게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10%(10점) 또는 5%(5점) 부여 ▲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 및 제31조 ▲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▲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 및 제35조 ▲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 ▲ 「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및 제22조 ▲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및 제24조
	가점항목	가점 부여 내용
	사회형평 가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고용노동부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지침」에 따라 해당 지원자에게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3%(3점) 부여 ▲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에 의한 장애인 ▲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▲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▲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호대상자 ▲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에 해당하는 자
<p>※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,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 (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) 또한,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3%(사회형평 가점 포함시)를 초과할 수 없음</p> <p>○ 최종합격자 결정 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가 있는 경우 다음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함</p> <p>① 법정 가점을 받은 취업지원 대상자, ② 사회형평 가점을 받은 자, ③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른 고령자, 준고령자 순, ④ 서류 및 면접전형 합산점수가 높은 자</p>		

V

접수서류

제출 서류	제출 시기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NCS기반입사지원서,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, 자기소개서 각 1부 	원서접수 시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개인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1부 (자필 서명 후 스캔하여 첨부) ○ 자격증 사본 각 1부(해당자) ○ 경력증명서 사본 각 1부(해당자) 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장애인증명서 1부(해당자) * 장애인 증명서, 복지카드, 상이군경회원증 등 	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에 한해 제출 (제출시기는 별도안내)

제출 서류	제출 시기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취업보호·지원대상자 증명서 각 1부(해당자, 국가보훈처 발급)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5px 0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☞ 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▲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 ▲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▲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 ▲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 ▲ 「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▲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</div>	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에 한해 제출 (제출시기는 별도안내)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저소득층(취업지원대상자/취업취약계층) 확인 증명서 각 1부(해당자) *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차차상위계층: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,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*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(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): 한부모 가족증명 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정채용확인서 1부(채용예정자) 	채용예정자 대상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(채용예정자) 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1부(채용예정자) 		

※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

※ 경력증명서는 해당 모집분야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력증명서를 첨부하되, 근무기간, 직위, 직급, 담당 업무(소속부서)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
(국민연금, 건강보험 취득상실 이력은 경력증명서가 아닙니다)

VI 근무조건

- 채용예정일: '25. 1. 2.(목)
- 근무기간 : '25. 1. 2.(목) ~ '25. 4. 1.(화), 약 3개월
 - * '25년도 정부예산안 국회 의결상황에 따라 채용계획이 취소되거나, 근무기간 등 채용조건이 변경될 수 있음
- 근무시간 : 주 5일(월~금), 1일 8시간(09:00~18:00, 휴게 1시간)
- 근무장소 : (유형1)(유형2)서울북부고용센터, (유형3)강북성북고용센터
- 주요업무 : 실업급여 업무 지원
- 보수수준 : 월 2,060,740원
 - ※ 정액급식비(월 14만원), 가족수당(해당자) 및 법정수당 별도
 - ※ 4대 보험 가입(건강보험, 국민연금, 고용보험, 산재보험)
- 그 밖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"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"에 따름

VII

기타유의사항

- 응시자는 **1개의 기관(청 또는 지청)에만 응시 가능합니다.**
(2개 기관에 중복하여 접수할 경우 0점 처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)
- 응시자는 서울북부지청에서 실시하는 **25.1.2.자 채용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 중복응시가 불가**합니다. (중복하여 접수 할 경우 0점 처리)
- 응시자는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제11조에 따라, **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 (반환청구기간)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**, 이 경우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를 반환(최종 채용 합격자,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인자(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)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)하게 됩니다.
-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상기의 반환청구기간의 말일까지이며, 보관기간동안 반환을 청구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된 서류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파기합니다.
-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 부담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.
- 응시원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,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, 결격사유, 채용 후 퇴직 등 사정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최초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채용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합격자 발표 후라도 신원조사 및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
-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합격이 취소되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.
-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.
 - ※ '25년도 정부예산안의 국회 의결상황에 따라 채용계획이 취소되거나, 근무기간 등 채용 조건이 변경될 수 있음
- 합격 통보된 자가 첫 출근일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유를 확인하고 포기의사가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채용 후 직무와 관련된 영리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안됩니다.

○ 결격사유

- ▶ 피성년후견인
- ▶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▶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▶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▶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▶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▶ 징계로 해고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▶ 병역을 기피 중에 있는 자

○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고용관리과 (☎ 02-950-9717)